

『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

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서윤기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

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, 종사자 노동조건 개선,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2019년 3월에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'이 설립되어 이를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.

-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,
안 제22조제1항제6호에 자목에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
‘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’을 추가하였습니다.

- 존경하는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
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운영위원회
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,
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